

動物檢疫 機能強化 方案

배상호

1. 서 론

우리나라는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하여 왔으나 GNP 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여 '70년 25.8%에서 '90년에는 10%이하로 떨어졌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도 '70년 75.8%에서 '90년에는 60%로 감소하였으나 농업조수입 중 축산수입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어 '70년 5.6%에서, '90년에는 18%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축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축산업 총생산액의 약 22%로서 '90년 약 7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인 것이다.

가축방역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방정책(prevention)이 최우선하고 둘째는 조정정책(controil), 셋째는 근절정책(eradication)으로 구분된다.

검역은 예방정책의 수단으로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봉쇄함으로써 축군의 건강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89년 11월 GATT의 BOP 출입으로 '97년까지는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될 예정이며 금년도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래성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와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민보건위생을 위한 동물과 축산물의 검역강화 대

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 축산물 검역의 의의와 현황을 알아보고 GATT의 UR 농산물협상 의제 중의 하나인 "위생 및 검역규제"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검역의 개요

가. 정의

검역(Quarantine)의 어원은 이태리어인 "quaranta"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의미는 "forty"를 뜻 한다. 그 이유는 수세기 전에 구라파에 천연두 등 악성 전염병이 유행하던 때에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배나 승객은 접안이나 상륙전에 40일간 억류·격리되어 검진을 받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나. 필요성

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축방역정책의 제1단계이며 가축질병의 전염원을 외곽차단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정책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가축질병이 침투되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환축 등 전염원을 도태·제거하는 근절정책이나 질병발생을 생물학적 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나가는 조정정책의 시행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막대한 양축 피해는 물론 축산업의 생산성에 적지 않은 피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결핵이나 파상풍,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한 것이다. 따라서 검역은 가축전염병의 유입·발생 및 전파방지로 양축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축산물의 위생검사제공으로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한다.

* 國立動物檢疫所

는 관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다. 적용범위 및 방법

검역의 적용은 질병의 특성 및 발생상황 등에 따라 동물개체별, 축종별 또는 지역별, 국가별 등으로 적용범위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검역의 원리는 개체간 또는 축군간 직·간접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검역중인 동물은 개별로 구분·격리 계류되어야 하며 물, 사료통, 기구 등도 각각 사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여건상 불가하므로 검역관은 동물개체나 기구, 시설 등의 소독이나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념조치하여야 함은 필수적인 것이다.

3. 우리나라 검역의 역사

우리나라 검역의 역사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에 우역이 발생되어 1890년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지방에 까지 전파되었으며 1908년에는 일본에서도 우역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09년 7월(융희 3년) 전문 13조로된 수출우 검역법을 제정·공포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소에 대하여 우역, 탄저, 유행성 아구창 병을 9일간 계류하여 검역을 하였으며 경남 동래군 우암리에 수출우 검역소(농·상공부)를 설치하여 7명의 검역관이 직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1910년 8월 한·일 합방이후에는 이출우 검역법으로 개정하고 부산, 인천, 성진, 원산, 진남포, 포항에 이출우 검역소를 각각 설치하여 1945년까지 연간 6~7만두씩 약 150만두의 한우를 강제로 이출검역 후 일본으로 반출했는데 일부 봉고 말도 포함되었다.

1945년 8월 이후에는 미군정하에 보건후생부 수의국 소속이었다가 1949년 6월 농림부산하에 부산 가축검역소가 설치되었으며, 1961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현 검역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1962년 2월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가축위생연구소의 시설과 부지를 인계받아 국립동물검역소로 개칭하고 15명의 검역관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본소가 서울에 위치하며 김포, 인천, 부산, 군산, 제주에 5개소를 두고 159명의 정원과 검역관 94명의 대기관으로 성장하기에 이르

렸다.

또한 '90년 3월 본소에 정밀검사과와 국제거역과를 신설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검역강화 대책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GATT의 UR협상 대비 등에 따라 이 분야의 확대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4. 동물·축산물 검역실시 현황

가. 검역 대상물 및 검역지정항

검역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907호, 61, 12, 30)과 축산물위생처리법(법률 제2738호, 74, 12, 26) 및 식품위생(법률 제 4071호, 66, 12, 31)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은 소, 돼지, 양 등 벌굽등이 2개인 우제류 동물과 말 등 벌굽이 하나인 기체류동물, 개, 고양이, 토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및 애완조류와 꿀벌, 야생 조수류, 정액 및 수정란, 원유 및 생치즈, 멸균 되지 아니한 햄, 소세지, 베이컨 등 수육가공품,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축, 털, 깃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펄, 혈분, 비늘, 오물과 위의 동물 및 생산물을 넣은 용기 및 포장, 그밖에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와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등의 물건이 모두 포함된다.

위의 지정검역물은 검역지정장소를 통하여만 통관될 수 있으며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3개소와 항구로는 부산, 인천, 군산, 북평, 여수, 마산, 제주, 울산, 포항 등 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나. 수입제한 품목 및 지역

우제류 동물의 생축(정액 및 수정란 포함) 및 축산물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영국, 애란, 덴마크, 스웨덴, 화란(원모피 포함) 등 11개국 이외의 지역은 구제역, 우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지역이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다. 검역장소 및 기간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소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축산물 작업방(도축장, 유육가공장)이나 원모피 전용 보관창고 또는 원모피 가공장 등 검역소 구내 시설이용이 부적당할 경우 동물검역소장은 검역 시행장을 지정하여 검역관을 현지 파견하거나 판

리수의사를 임명하여 검역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검역기간은 1~15일로서 표1과 같으며 이 기간 동안 동물의 경우 가축전염병의 병인체 검사를 위하여 임상검사, 반응검사, 혈청학적검사 등을 실시하고 축산물의 경우 이화학적검사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표 1. 검역기간

품 목	수 출	수 입	비 고
	일	일	
개·고양이	1	10	광견병 예방접종필
우제류 동물	7	15	
기체류 동물	5	10	
닭, 칠면조, 거위, 오리	2	10	
초생추	1	10	
기타동물	1	5	
질병이환축 회복후10일	좌동	살처분대상제외	
축산물 기타	2일	3~18일	검사항목별 차이

* 폐지(PRRS, MPD 발생국) : 30일로 검역기간 연장 및 비 발생 증명서 첨부요함.

* 동물검역소장은 필요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표의 검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조정 가능.

라. 수입위생조건

지정검역물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내용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대상품목은 지정검역물중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과 정액 및 수정란, 말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국 내의 무발생 가축전염병의 종류, 생산농장의 무발생 가축전염병의 종류와 무발생 기간, 검사대상 질병별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수출시의 검역장소 조건 및 검역기간, 수송 및 소독방법, 검역증명서 기재내용 등을 정하여 상대국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 검역절차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검역절차로 표1, 그림 2 과 같다.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30일전에 수입할 검역물의 수량 및 수입시기 등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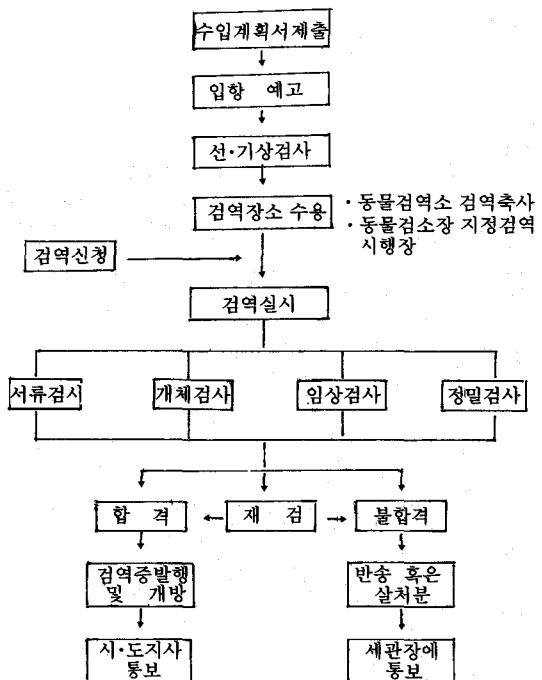


그림 1. 동물의 수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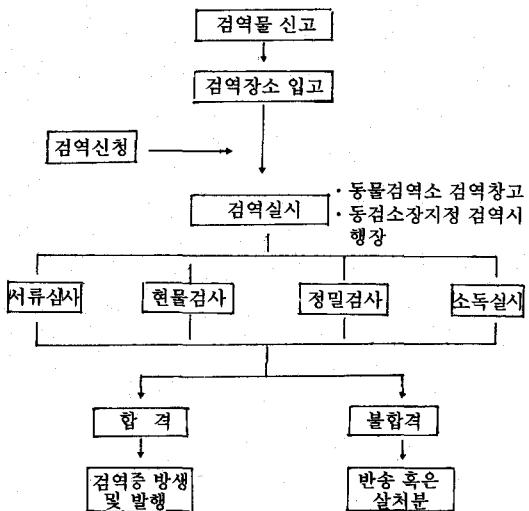


그림 2. 축산물의 수입절차.

서를 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검역소의 검역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검역물의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받는다.

검역방법은 서류심사, 개체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개발하고, 불합격시는 반송 또는 살처분후 소

각, 매몰한다.

축산물은 서류심사, 현물검사, 정밀검사와 필요한 소독을 실시한 후 개방하거나 발송 또는 폐기처분한다.

5. GATT/UR 검역대책

가. GATT/UR의 위생 및 검역규제

위생 및 검역규제(SPS)의 설정 추진목적은 GATT 제20조 B항(인간,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상품수출입에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의 자유무역 이행의무 면제사항의 적용규범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국제간 교역에 위장된 수입제한 수단으로의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추진경위는 '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텔에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에 따른 각료선언증 위생 및 검역규제에 관한 규범설정의 필요성이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12회에 걸친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 끝에 '90년 11월 작업단 회의결과를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최종 각효회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대한 체약국간 결의문(안)

합의문은 본문 제49조 및 별표 3에 작성되었으며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약국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을 보유한다.

둘째, 위생 및 검역규정은 국제기구의 기준, 권고 혹은 지침에 조화되어야 한다.

셋째, 위의 규제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제교역에서 위장된 무역 제한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넷째, 위의 규제는 국제교역과 내수용에 차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체약국은 위의 규제내용을 변경시에는 GATT에 신고하여야 하며 체약국에도 알려줘야 한다.

여섯째, 위의 규제에 대한 분쟁발생시 GATT의 분쟁해소 절차를 적용한다. 그리고 시행은 결의문

채택후 6개월후부터 한다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있으며 동 기구는 '24년 각국의 가축위생에 관한 질병정보와 기술교류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와 방역대책에 공동대처하고자 창설되었는 바 현재는 114개국이 가입되었고(한국은 '53년에 가입), 불란서 파리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매년 5월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 검역강화대책

GATT/UR협상추진에 따른 검역강화대책은 제1단계로 '92~'96까지 5개년간 총 241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교역량 증대에 대비한 검역기능의 현대화와 검역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검역규정의 국제기준에의 조화를 기본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악성전염병 검역체계확립

구체역, 우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96년까지 총 133억 원의 예산으로 가축위생연구소에 부설하여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단방법 개발은 물론 예방약 비축 등 유사시에 대비코자 한다.

(2) 검역기능 강화

정밀검사시설 현대화 및 장비보강과 동시에 검역관의 국내외 기술연수를 통한 정밀검역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기능강화대책에 임하고자 한다.

(3) 검역정보체계 확립

국내적으로는 분지소간, 중앙행정부서간 검역 전상망 연결로 검역실시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국제적으로는 수출입 주요 상대국과 전산망 연결로 검역정보교환 등 검역행정의 선진화 추진과 외국의 검역제도와 가축위생상황조사 등 해외의 가축질병정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집에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4) 검역관계 규정정비 및 제도개선

우리나라 검역규정의 구체화로 명료성을 확보하고, OIE의 동물위생규약 등 국제기준에 관련 규정의 조화를 이루어 국제검역에 동참토록 관련 검역규정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6. 결 론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목전에 두고 세계 제12위의 교역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인 반면, 가축위생분야는 정부조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볼때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온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제교역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교역물량의 증가, 품목의 다양화, 수출입선의 다변화, 국제간 수송의 신속화 등으로 인하여 가축전

염병의 유입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질병 출현으로 보다 강력한 가축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행정체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 또한 UR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보건위생을 위한 동·축산물 검역대책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동물검역발전 5개년계획('92~'96)추진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수의사를 위한

도 몬·L

바이러스성질환 치료제

○작용기전 :

- 1) 인터페론 유도 작용
- 2) 중화항체생성 촉진작용
- 3) 강한 소염작용
- 4) 면역 촉진작용

○임상적 응용 예 :

- 1) 개의 디스템퍼 증후군, 파보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성기관지염 (Kennel Cough).
- 2) 고양이의 전염성 비기관염 (FVR) 범백혈구 감소증, 전염성 출혈성 장염.
- 3) 소, 송아지, 돼지의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질병 (송아지 감기, 폐렴, 하리, 자돈 하리, TGE 등)에 특효가 있음 (일본 수의축산신보 게재)
- 4) 가축의 각종 바이러스성 또는 복합 감염 질병의 치료시 보조치료제로 사용.



수입·판매원 :



한국동물약품주식회사

제조원



NICHIBIO LABORATORIES LTD.

*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사 학술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